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부정사용 처리 기준 및 절차

1. 관련 근거

○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사업 기본계획 등

① 「평생교육법」 제16조의3, 제42조의2 등

제16조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42조2(지도·감독)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6조 (교육부 고시 제2021-34호 / 시행 2021. 12. 9.)

제6조(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① 진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판매·대여나 부정사용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 4. 그 밖에 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2024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기본계획 「부정사용 행위기준 및 처리방안」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부정사용 처리기준 >

대상	유형	조치사항
바우처 사용 기관	■ 사용기관 등록범위 및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경우	■ 바우처 부당 이득금액 반환 ■ 바우처 사용기관 운영중지 또는 등록취소 ■ 사안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타인 명의도용 바우처 신청 및 부정 사용(신청인 본인의 요청 및 동의 없이 임의로 바우처 신청 또는 사용)	
	■ 사용처 이외 강좌 수강 및 목적외 사용(재료·물품 구매) 등 부정 사용 유도	
	■ 서비스 비용 허위·과다 청구	
	■ 바우처 담합에 의한 현금화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공급)한 경우 등	

④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준수사항 (사용기관 신규 신청 또는 현행화시 동의절차 진행)

2. 바우처 사용기관 부정사용 유형에 따른 세부 내용 및 처리기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부정사용 처리기준

유형	내용	처리기준	관련법 및 규정
① 등록범위 상실·자격 미충족	• 사용기관 등록 범위(유형) 및 자격을 미충족하거나 자격을 상실 한 경우 • 관할 기관에 등록 정보가 아닌 허위 정보로 사용기관을 등록·변경한 경우	• 바우처 사용기관 행정조치 – 사용기관 등록 취소 • 부당이득 반환 ※ 사안별 관할청 처리규정 준용하여 단순 사안의 경우 운영중지 가능	•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제45조의3(벌칙) 등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등 •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 배임)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
② 명의도용 및 부정사용	•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본인의 요청 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 바우처 이용자의 동의 없이 바우처 사용케 하는 행위		
③ 목적외 사용 유도	• 바우처 사용처 이외 강좌 수강 및 목적외 사용 등 부정 사용을 유도하는 행위(사용기관 및 강좌 홍보물 등) • 사용기관의 수강료·해당 교재비 이외 물품 구매, 수수료, 기타 비용 등 사용 유도, 정해진 장소(위치)가 아닌 곳에서 교육 운영 행위 등	• 바우처 사용기관 행정조치 – 1차 : 경고(시정 조치) – 2차 : 6개월 운영 중지 – 3차 : 사용기관 등록 취소 • 부당이득 반환	
④ 서비스 비용의 허위·과다 청구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바우처 사용에 따른 서비스 대가 등을 일반 이용자 대비 높게 청구한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⑤ 바우처 현금화	• 바우처 사용기관이 이용자와 담합을 통해 바우처 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하는 경우 • 바우처 강좌 수강을 대신하여 상품권 지급, 비허용 상품 구매 대행 또는 구매 유도하는 행위	• 바우처 사용기관 행정조치 – 사용기관 등록 취소 • 부당이득 반환	
⑥ 기타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 사안에 따라 운영중지 또는 평생교육이용권 심의회를 통한 결정,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 • 부당이득 반환	
* 재등록 기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부정사용 처리기준에 따라 등록 취소(가맹점 해지)되면,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취소된 등록사항으로 재등록 불가		—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부정사용 사안에 따라 행정조치 및 부당이득 반환 등 개별 또는 중복 적용 처리

※ 관련 용어 설명

- 경고(시정조치) : 행정공문 또는 메일 등을 통한 1차 경고 및 (운영중지 후) 시정 요청, 정보 수정 및 시정 요청 등을 지속적으로 미이행시 2·3차 행정조치 할 수 있음
- 운영중지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이 불가하도록 가맹점 번호 중단(영업중단) 조치이며, 시정 요청 미이행시 기한과 관계없이 운영 중지 조치 유지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사안에 따라 부정사용 등으로 사용기관에 지급된 지원금 반환(이용자 카드 취소 또는 사용기관 지원금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를 할 수 있음

○ 기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운영 중지 및 등록 취소 사항

- 바우처 사용기관 온라인 모니터링 및 현행화 등을 통해 휴폐업 여부를 확인한 사용기관
 -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운영 중지 또는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별도 행정공문을 통해 확인 및 시정요청에 따른 운영 중지 등의 조치 사항을 안내한 경우
- ※ 사용기관 정보 현행화 미참여 또는 부정사용 방지 관련 기관 자체 점검요청, 바우처 관련 사용기관 준수(유의) 사항 등 미이행시 운영 중지 실시
- 그 밖에 평생교육바우처의 건강한 이용 체계 마련 및 사용 관리를 위해 사용기관 운영 중지 또는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바우처 사용기관 부정사용 등 관련 민원 사후조치 절차(안)

구 분		주 체	내 용
①	부정사용 신고 및 접수	신고자	-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또는 사용기관 부정사용 의심 사항에 대한 신고 및 접수 - 신고 관련 사항 확인 → 부정사용 행위가 아니거나, 신고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자체 종결* 및 종결 내용 신고인 통보 * 자체 종결 사항 -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빙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 및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신고자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접수된 신고가 있거나, 처리중인 경우 - 그 밖에 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체종결 필요가 판단되는 경우 등
	사용기관 모니터링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 이용자 바우처 사용기관 결제(사용) 내역 분석 -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정보 및 운영 교육과정 모니터링 - 바우처 사용기관 홍보물·관련 홈페이지, 이상결제 패턴 분석 - 바우처 교육과정 및 학습자 정보, 출결관리 등록 현황 확인
↓			
②	사실 여부 확인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신고 또는 모니터링 세부 내용 확인·검토
↓			
③	추가 조사 및 조치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및 관련 기관	- 부정사용 행위로 의심되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추가 조사 실시(자료 요구 또는 필요 시 현장점검) - 사안에 따라 평생교육시설·평생직업교육학원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 또는 조치 요구 → 부정행위·규정 위반이 명확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용기관 정보 불일치 등 사안에 따라 바우처 사용기관 운영 중지 조치(추가 부정사용 발생 방지) ※ 사용기관 해당 위반사항 시정 및 수정 조치 완료할 경우, 운영 중지 해제 가능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부정사용 사안 및 처리기준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별도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래 평생교육이용권 심의 추가 절차 진행			
④	부정사용 처리 방안 심의	평생교육이용 권심의회	부정사용 사실 확인 및 검토 내용, 부정사용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조치사항 심의(등록 취소 사항 등)
↓			
⑤	최종 조사결과 조치 · 통보	교육부(국가평 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심의 결과 교육부 보고 - 심의 및 결과 승인 통보에 따른 사용기관 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등 결정·통보 ※ 조치를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필요시 관련법 의거 추가 수사 의뢰·고발 조치 등

참고 1

평생교육바우처 부정사용 관련 법령

○ 평생교육바우처 부정사용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법	조항	조문내용
평생교육 법	제16조의3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42조 (행정처분)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관련법	조항	조문내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 (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 (횡령,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의 이를 교사·알선한 자